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88-9798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3.06.15.(목)	2025.06.19.(목)	2025.06.24.(화)	2025.06.27.(금)	2025.06.30.(월)~ 2025.07.01.(화)	2025.07.04.(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종료되어, 청약 및 계약 전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 및 발코니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시공 중임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 및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9.(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23**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15.(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211**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6.24.(화)	2025.06.27.(금)	2025.06.30.(월)~2025.07.01.(화)	2025.07.04.(금)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64번길 12, 시흥배곧C2 호반써밋플레이스 208동 210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07.04.)로부터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8509호(2025.06.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29층 7개동 총 856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특별공급 1세대(생애최초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m²)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생애최초)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5930023	01	084.7184C	84C	84.7184	26.9443	111.6627	53.1122	164.7749	49.6431	1	1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C
생애최초 특별공급	1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대금	계약 시	2025.11.07.	입주지정기간 내
84C	5403	2702	172,231,000	319,569,000	-	491,800,000	49,180,000	49,180,000	393,44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제공 품목 현황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동	호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5.11.07.	입주지정기간 내	
84C	5403	2702	5,130,000	513,000	513,000	4,104,000	- 가변형 벽체 기본형 (각 실 별도사용)

■ 추가선택품목 금액 및 제공 품목 현황

(단위: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5.11.07.	입주지정기간 내	
84C	5403	2702	25,820,000	2,582,000	2,582,000	20,656,000	-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4안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 거실 라인조명 (거실 우물천장 2면 라인 조명) - 주방 상판, 벽 세라믹타일 - 주방 팬트리 (가구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선반) - 침실1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조명형) + 입식파우더) - 침실1 고급형 드레스룸 도어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주방 전기쿡탑 (LG) - 주방 전기오븐 (삼성) - 공용욕실·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대림비앤코)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중도금,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06.15.)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는 주택법 위반에 따른 재공급세대로 최초 분양대금 납입조건(계약금·중도금·잔금 납입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시공 중인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발코니확장대금,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145-910025-90404	(주)하나자산신탁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r><td>2025.06.19.</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r></tabl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6.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6.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6.27.(금) ~ 2025.07.06.(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6.2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특별공급 당첨자 (생애최초)	2025.06.30.(월)~07.01.(화) 10:00 ~ 16:00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화로 264번길 12, 시흥배곧C2 호반써밋플레이스 208동 210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2항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상기 장소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별도 고지 예정으로,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서류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상기 장소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정해진 기간 내(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주택소유 확인서	본인	청약Home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전체 포함)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발급,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타 지역 거주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상기 장소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청약자격 검증 서류 제출일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 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의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②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상기 장소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본사 ② 세무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 및 계약 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 일시: 2025.06.27.(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5.07.04.(금) (10:00~16:00) - 장소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64번길 12, 시흥배곧C2 호반써밋플레이스 208동 210호)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발코니확장대금,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145-910025-90404	(주)하나자산신탁

※ 공급대금은 상기 대금별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금수납이 불가하며(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아파트 공급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납부기일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 공급방법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입주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9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발급) / 본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가격검증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 비치 (계약 시 계약자 인감날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을(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액(균등납부)	15만원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구 분	내 용
공통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지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개발계획 및 단지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전체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로서 향후 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근린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

	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인근 도로 및 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남동측: 폭 20M, 남서측: 폭16.5M, 북서측: 폭 24.5M, 북동측: 폭 20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교관련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관할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며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본 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배정 될 예정이나 추후 관할교육청의 학교배치관련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초등학교 배치 : 검단9초 배치 예정(2026. 3월 이후 개교 가능) - 중학교 배치 : 학교군 내 배치 예정 - 고등학교 배치 : 학교군 내 배치 예정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 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공용 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항공장애등,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웬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 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견 및 제반법규 등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 단지 동측, 인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경비실 등 설치됨.
 - 부출입구 : 단지 남서측, 인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커뮤니티시설, 경비실 등 설치됨.
 - 근린생활시설 차량 출입구 : 근린생활시설#1의 차량출입구는 단지 주출입구를 겸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1 측면부에 3대 설치 됨
근린생활시설#2의 차량출입구는 단지 서측 별도의 출입구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2 후면부(지하층)에 33대 설치 됨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남측부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지정으로 105동 지하1층에 커뮤니티시설 등이 설치됨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 번호는 계획기준상 101~107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향후 입주시의 명칭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 부출입구 인근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05동, 106동 부근 지하에 발전기실 및 전기실, 기계실, 펌프실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매연(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 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피난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 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06동 지붕층엔 소화저수조가 설치 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등 모델하우스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동 옥상 일부구간에 세대 내 일조량 확보를 위하여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 될 예정으로 실시공 시 사양, 위치, 수량, 크기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주동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현관 및 필로티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특화계획과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옥상 및 구조물의 형태,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 1~2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1층에 위치함.
- 본 단지의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내 101동, 107동 사이, 105동 지하1층 각1개소씩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1의 주차장 출입구는 동측부 아파트 주출입구를 공유하고, 근린생활시설#2의 주차장 출입구는 서측 103동 하부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 함,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진입통로의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주통로 유효높이 2.7m / 그 외 통로 2.3m, 지하2층 2.3m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103동, 104동 지하1층 인근에 근린생활시설#2 지하주차장 및 105동 지하1층 인근에 커뮤니티시설이 위치하여 일부 주차이용에 제한이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하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 방재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실),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맘스카페, 용역원 휴게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웬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105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되며, 단지 부출입구 및 105동 1층 인근 외부계단실(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이로 인해 105동 저층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됨. 또한 실 시공 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 구획될 예정이며 통행 시 미관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 시공시 위치나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동측 아파트 주출입구 인근 1개동(지상1개층 계획), 단지 서측 103동, 104동, 105동 지하 1층에 1개동(지하 1개층 계획)으로 총 2개소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릿,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하1층 주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추후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1층 필로티 및 주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유효 지반가속도(S)	지반 종류	중요도 계수(I _e)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76	S ₄	1.2	D	I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204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이 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 PAD,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 분배기 및 세대 통합 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 등은 기간 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1동 지붕에 TV 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 방향 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안테나(102동, 104동, 105동, 107동 지붕층) 및 중계설비(지하 1층, 2층 주차장 팬룸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 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 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지역난방·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주변 레벨차에 따라 조경석, 옹벽, 산석, 보강토 옹벽 및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담장 등으로 시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소음등에 영향이 발생됨.
- 105동 지하1층에 휘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타격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인근 단지 부출입구 계단, 커뮤니티시설 계단 및 장애인경용 승강기가 설치되며, 103동과 104동 사이 / 102동 후면부에는 외부 계단이 설치 될 예정임.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 위치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집 : 101동, 102동, 103동 사이에 설치 / 경로당 : 105동 1호라인 전면, 106동 정면에 설치 / 다함께 돌봄센터 : 105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

	- 활동정원 : 103동 후면에 설치 / 건강정원 : 105동 전면에 설치 - 주민공동시설 : 105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 - 근린생활시설#1 : 107동 1호라인 정면 및 106동 후면에 설치 / 근린생활시설#2 : 103동, 104동, 105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 - 유아놀이터 : 101동 전면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1 : 102동 전면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2 : 106동 후면 및 107동 1호라인 전면에 설치 • 101동 1호라인, 107동 1,3,4호 라인 저층부 및 105동 3~5호라인의 경우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외벽이 노출되는 구간에 일부 벽체가 OPEN 되거나 그릴창 설치되어 외기(빛물, 바람, 눈 등)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구간에는 투시형 난간 및 생활타리 담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 84A,C : 거실-침실2, 침실2-침실3 / 84B: 침실2-침실3간 설치되는 벽체는 발코니 확장 유무에 상관없이 가변형 벽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선택 범위 내에서(84A,C : 거실-침실2 통합 또는 침실2-침실3 통합 / 84B : 침실2-침실3 통합) 가변형 벽체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음.(설치 위치 및 설치안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단, 발코니 확장 비선택시 선택안 제공 불가)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급형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 위치에는 도배 및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건립 당시) 등을 기준으로 함. • 전기국립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4구 가스국립은 제공되지 않으며, 전기국립 옵션 금액은 가스국립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된다.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샷시, 유리의 사양 및 형태는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기술 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대 내 무선 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 설치 1~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필로티 상부 1개층)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건립 당시)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온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3~10F 세대 대피공간 내에 완강기 및 발판이 설치됨.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주방 싱크장 등 고정 가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 실외기실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항목별 등급 상이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우수등급(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인천광역시 AB1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신청자 : (주)호반건설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47-10
-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성적용 차단성능	★★★★
2. 중성축적용 차단성능	★★
3. 적외선 방열체의 차열성능	★★
4. 고효율(도료, 필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성 방화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압성	★★
3. 수직층상 질량부분	*
4. 수직층상 질량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건물내외 온도차 전유도로 조성 및 연열	★★★
2. 대공공용회 근접성	★★
3. 과열한 지하층의 적열성	*
4. 외풍차단성(도료, 필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외풍차단성(도료, 필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6. 에너지 성능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성능	★★★★
9. 에너지 성능	★★★★
10. 에너지 성능	★★★★
11. 에너지 성능	★★★★
12. 에너지 성능	*
13. 에너지 성능	★★★★
14. 에너지 성능	★★★★
15. 에너지 성능	★★★★
16. 에너지 성능	★★★★
17. 에너지 성능	★★★★
18. 에너지 성능	★★★★
19. 에너지 성능	★★★★
20. 에너지 성능	★★★★
21. 에너지 성능	★★★★
22. 에너지 성능	★★★★
23. 에너지 성능	★★★★
24. 에너지 성능	★★★★
25. 에너지 성능	★★★★
26. 에너지 성능	★★★★
27. 에너지 성능	★★★★
28. 에너지 성능	★★★★
29. 에너지 성능	★★★★
30. 에너지 성능	★★★★
31. 에너지 성능	★★★★
32. 에너지 성능	★★★★
33. 에너지 성능	★★★★
34. 에너지 성능	★★★★
35. 에너지 성능	★★★★
36. 에너지 성능	★★★★
37. 에너지 성능	★★★★
38. 에너지 성능	★★★★
39. 에너지 성능	★★★★
40. 에너지 성능	★★★★
41. 에너지 성능	★★★★
42. 에너지 성능	★★★★
43. 에너지 성능	★★★★
44. 에너지 성능	★★★★
45. 에너지 성능	★★★★
46. 에너지 성능	★★★★
47. 에너지 성능	★★★★
48. 에너지 성능	★★★★
49. 에너지 성능	★★★★
50. 에너지 성능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경향성적용 차단성능	★★★★
19. 중성축적용 차단성능	★★
20. 적외선 방열체의 차열성능	★★
21. 고효율(도료, 필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2. 화상성 방화수 소음	★★★
23. 경향성적용 차단성능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거율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열재의 환기성능 확보	★★
27. 자광으로부터의 빛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재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열	★★★
2. 대공공용회 근접성	★★
3. 과열한 지하층의 적열성	*
4. 외풍차단성(도료, 필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외풍차단성(도료, 필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6. 에너지 성능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성능	★★★★
9. 에너지 성능	★★★★
10. 에너지 성능	★★★★
11. 에너지 성능	★★★★
12. 에너지 성능	*
13. 에너지 성능	★★★★
14. 에너지 성능	★★★★
15. 에너지 성능	★★★★
16. 에너지 성능	★★★★
17. 에너지 성능	★★★★
18. 에너지 성능	★★★★
19. 에너지 성능	★★★★
20. 에너지 성능	★★★★
21. 에너지 성능	★★★★
22. 에너지 성능	★★★★
23. 에너지 성능	★★★★
24. 에너지 성능	★★★★
25. 에너지 성능	★★★★
26. 에너지 성능	★★★★
27. 에너지 성능	★★★★
28. 에너지 성능	★★★★
29. 에너지 성능	★★★★
30. 에너지 성능	★★★★
31. 에너지 성능	★★★★
32. 에너지 성능	★★★★
33. 에너지 성능	★★★★
34. 에너지 성능	★★★★
35. 에너지 성능	★★★★
36. 에너지 성능	★★★★
37. 에너지 성능	★★★★
38. 에너지 성능	★★★★
39. 에너지 성능	★★★★
40. 에너지 성능	★★★★
41. 에너지 성능	★★★★
42. 에너지 성능	★★★★
43. 에너지 성능	★★★★
44. 에너지 성능	★★★★
45. 에너지 성능	★★★★
46. 에너지 성능	★★★★
47. 에너지 성능	★★★★
48. 에너지 성능	★★★★
49. 에너지 성능	★★★★
50. 에너지 성능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방화 및 경보설비	*
2. 화재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확산경계	★★
5. 복도 및 계단코너비	★★★★
6. 계단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AB1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주 : (주)호반건설 준공(예정)일 : 2025.12.3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47-10.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44,354.6788㎡ (다가연면적: 140,780.7811㎡)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디로움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2-145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2.2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 인증등급 : 우수(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 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2등급)) 건축물로 인증획득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2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AB1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예정)일 : 2025.12.3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47-10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44,354.678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디로움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2-주-에-1+-0062 평가자 : 한국부동산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구분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kWh/㎡·년)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kWh/㎡·년)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kWh/㎡·년)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kWh/㎡·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2.4	42.6	32.6	7.2
급탕	39.7	38.3	26.4	6.4
조명	6.6	6.3	14.7	2.6
환기	3.4	9.2	2.6	1.6
합계	69.7	89.8	84.9	17.7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
- 한국부동산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냉방, 난방, 급

■ 기타 인증서 표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특등급, AA등급				결로방지성능평가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발급번호 K712-L				
			제 2023-101-008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입부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1년 1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신청인	이름		(주)호반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786 B102호(우면동, 호반 파크2관)					
건축물	이름		인천검단지구AB19블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2-1					
인증내용	구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 AAA(홈IoT) ☒ AA ☐ A					
2023년 02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인)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발급번호 K712-L
1.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AB1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호반건설				
3. 대지위치	인천검단지구 AB19블록				
4. 사업개요					
대지면적	42,977.00 m ²				
건축면적	6,001.81 m ²				
면적	144,354.67 m ²				
층세대수	856 세대				
주건축물수	7 개동				
5. 대상지역	지역 II				
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소	적합	부적합	비고	
출입문	6 개	☒	☐	물리적 시험	
벽체접합부	545 개	☒	☐	가이드라인	
창호	28 개	☒	☐	물리적 시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2 년 12 월 28 일					
(사)한 국 환 경 건 축 연구 원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전용보일러(다목)	미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동화이엔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이림기술단
감리금액	2,736,323,700	833,968,645	912,270,000	175,78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19,772,841,647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45,016,880,000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181,950,000	
		기간이자	6,763,855,008				용접공사				난방설비공사	3,117,607,000	
		필요적경비	6,246,555,608				조적공사	1,730,101,000			가스설비공사	650,929,000	
		그 밖의 비용	14,571,066,543				미장공사	3,186,126,000			자동제어설비공사	256,946,000	
		계	147,354,318,806				단열공사	959,264,000			특수설비공사	205,557,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2,449,549,000		방수·방습공사		1,336,117,000		공조설비공사	
			흙막이공사					목공사	2,894,921,000	그밖의공종		전기설비공사	14,080,622,000
			비탈면보호공사					가구공사	5,875,491,000			정보통신공사	7,948,186,000
			옹벽공사			650,929,000		금속공사	3,066,218,000			소방설비공사	10,534,772,000
			석축공사					지붕 및 홍통공사				승강기공사	2,860,662,000
			우수·오수공사			942,134,000		창호공사	3,374,553,00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7,605,592,000
			공동구공사					유리공사	1,421,766,000			이윤	11,343,533,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타일공사	2,826,402,000		계	169,964,654,000	

		도로포장공사	993,523,000			돌공사	3,357,423,000	간접비	설계비	3,058,877,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도장공사	1,747,230,000		감리비	4,151,333,000
		정화조시설공사				도배공사	1,336,117,000		일반분양시설경비	20,310,295,000
		조경공사	4,385,206,000			수장공사	3,425,942,000		분담금 및 부담비	
		부대시설공사	51,389,000			주방용구공사	1,353,247,000		보상비	
	건축	공통가설공사	4,693,541,000	기계 설비		그 밖의 건축공사	4,659,281,000		기타사업비성 경비	40,150,122,191
		가시설물공사	925,004,000			급수설비공사	1,438,896,000		계	67,670,627,191
		지정 및 기초공사	2,689,365,000			급탕설비공사	1,438,896,000		그 밖의 비용	33,838,400,003
		철골공사				오수배수설비공사	1,952,787,000		합계	418,828,00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27,581,477,159	건축비 가산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33,838,400,003	
	법정 택지이자		6,763,855,008		법정초과 복리시설		2,113,190,702	
	취득세	취득세	4,790,913,665		인텔리전트 설비	홈 네트워크	7,664,044,890	
		지방교육세	479,091,366			초고속통신 특등급	2,157,118,020	
	재산세	재산세	503,045,934			에어컨 냉매배관	2,681,383,500	
		지방교육세	100,609,186			기계환기 설비	3,670,684,290	
		재산세도시지역분	352,132,154		공동주택 성능등급		7,552,999,971	
	등기수수료	보수료	20,417,4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444,037,473	
		인지세	345,891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513,153,767	
	말뚝박기 공사비		8,180,228,88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06,425,00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5,262,429,060		건축특화	건강친화형주택 (흡착흡방습 친환경자재)		
	지역난방부담금		1,128,408,603			외관특화 공사비		1,855,433,790
						법정초과조경 설치비		977,581,340
			분양보증수수료		1,102,347,26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3-101-0001300 호	일금 인천구백삼십일억칠천구백육십만원정 (₩293,179,6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 이후 견본주택, 설계도서 등의 변경사항을 입주자 안내문으로 기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상 호	(주)호반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파크 2관)
법인등록번호	204711-0007384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 문의 : 1588-9798**